국가 지원 자금 100% 활용을 위한

창업기업 자금확보 성공전략

성균관대학교 창업대학원
김성민교수
010-9635-2424 / bossksm@naver.com

교수소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 니체-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 큰길을 모르겠거든 직진 돌격하라!"

- 벤처창업진흥 협동조합 대표(춘천시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 특임교수(학생 교수창업, 기업가정신)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겸임교수(소셜벤처창업론)
- (사)K-스마트뷰티기업협회 부회장
- 성균관엔젤클럽 총무(실전투자자 : IR사업계획서작성)
- (사)벤처기업협회 벤처마케팅포럼 의장(국내외 마케팅전략)
- 희망벤처금융포럼 상장지원센터 운영위원(IPO / M&A)
- 前 연세대창업대학원 창업학 전담교수(사업계획서지도방법론)
- 前 강원대 외래교수(중소벤처기업자금확보전략) ▪ 前 성균관대 학부대학 겸임교수(창업비즈니스 사업계획)

■ 창업강의 및 멘토(자문)

YES 리더 기업가정신 강의, KAIST, 포항공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강원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단국대, 명지대, 충남대, 충북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향대, 상지대, 강릉원주대, 한라대, 한중대, 한림대, 관동대, 전주대, 원광대, 경동대, 부천대,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신구대, 연성대, 송호대, 경기대, 용산구청BI, 안양시, 서천군, 완주군, 서울산업진흥원(SB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환경연구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충북테크노파크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무순)

■ 창업 전문분야 및 주요 창업교육/기관

- 삼성전자 : 기술기반창업전략,정책자금확보전략,1인지식기업창업전략(창업멘토양성)
- 삼성금융 : 창업아이템발굴선정, 트렌드분석, 자영업프랜차이즈성공전략
- 벤처협회 : 정책자금전문가과정, 유형별 사업계획서작성(R&D사업계획서)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창업절차 및 회사설립절차, 정부지원제도활용전략
- 국방전직교육원 : 창업개론 및 정부지원정책

■ 수상내역

- 전자IT산업발전 유공자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지식경제부)
- 국가 산업발전유공자 지식경제부장관표창(지식경제부)
- 벤처7일 장터 우수 및 최다 멘토 표창 (사)벤처기업협회
- 벤처기업협회장상 (사)벤처기업협회 ▪ 용산구지역경제발전 유공자 표창(용산구청)

■ 실전창업경력(성장단계별 성공창업전략수립)

- 기술창업 : IT 중소벤처기업 4건, 컨설팅회사 3건, 화장품회사 3건
- 소상공인창업 : 아이스크림전문점(5년), 도시락전문점(5년), 치킨집(2년)
- 협동조합 : 3건 / 협회 5건
- 창업지원기관 : 5년 / 프랜차이즈 구축 5건

■ 국책과제 심사평가위원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창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 평가위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평가위원
-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부천산업진흥재단 창업맞춤형지원사업 심사, 전문멘토

■ 국책과제 평가(R&D자금확보성공 기술사업계획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벤처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월드클래스300,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과제, 기술혁신개발과제, 산학협력기술개발 융합전략과제, 1인창조기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 창업인턴, 선도벤처연계, 창업맞춤형,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시티선정,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아이디어경진대회 , 대한민국창업리그, 초기창업패키지 등

■ 국가공인 멘토/컨설턴트

- 소상공인 컨설턴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협동조합활성화 협업컨설턴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MRO컨설턴트(중소기업유통센터), ▪ 창업멘토 심사위원(창업진흥원)
- 창업보육전문가선정(한국창업보육협회)
- 업종닥터 전문지도 컨설턴트(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 시장활성화 컨설턴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베이스캠프 멘토(GBSA)
- 기술닥터, 정부사업참여전략컨설팅 전문컨설턴트(경기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 성장 전략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전략

성장단계별 자금확보 로드맵 수립

- Death Valley : 3년~7년 죽음의 계곡 직면
  : 창업 이후 사업화 및 시장진입에 실패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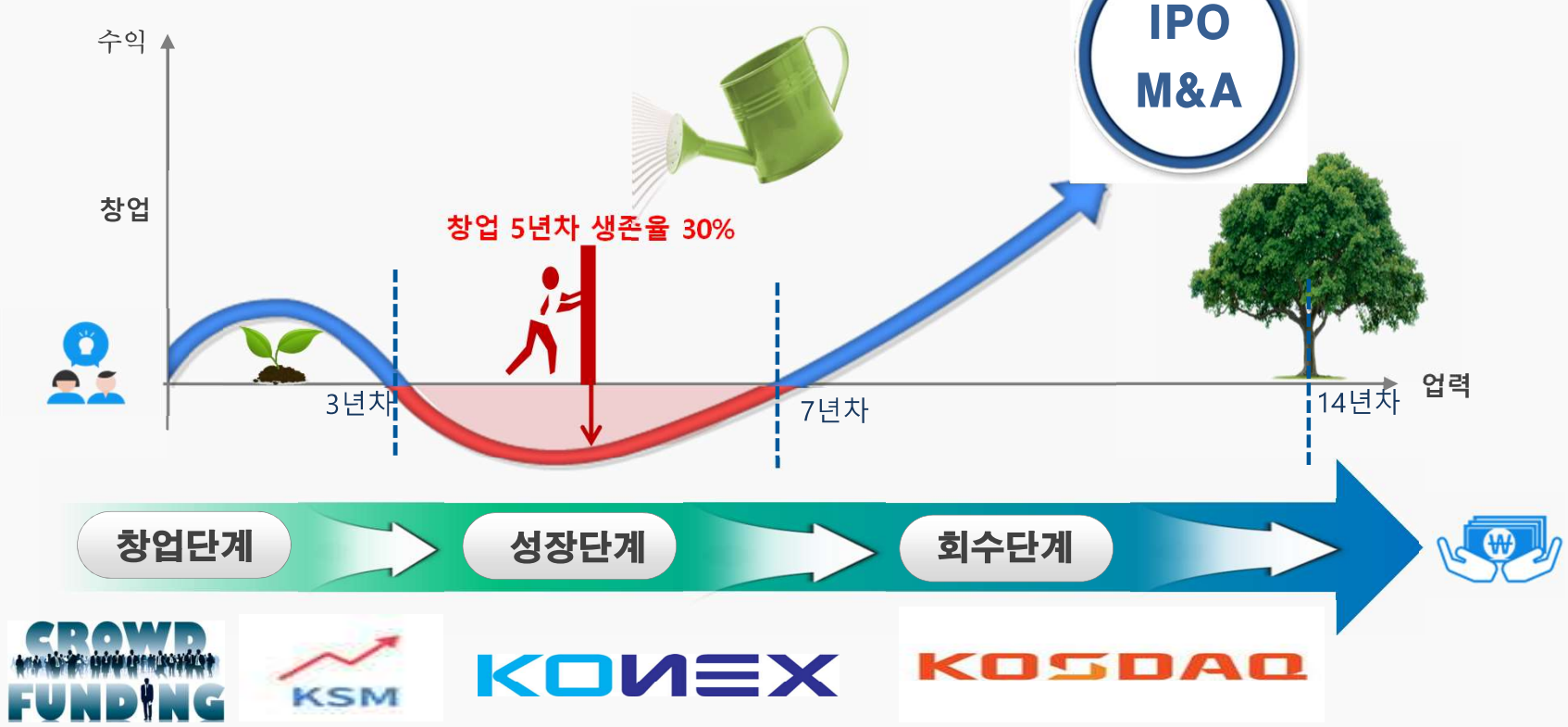

단계별 기업공개 요건

성장단계별 상장전략

시장 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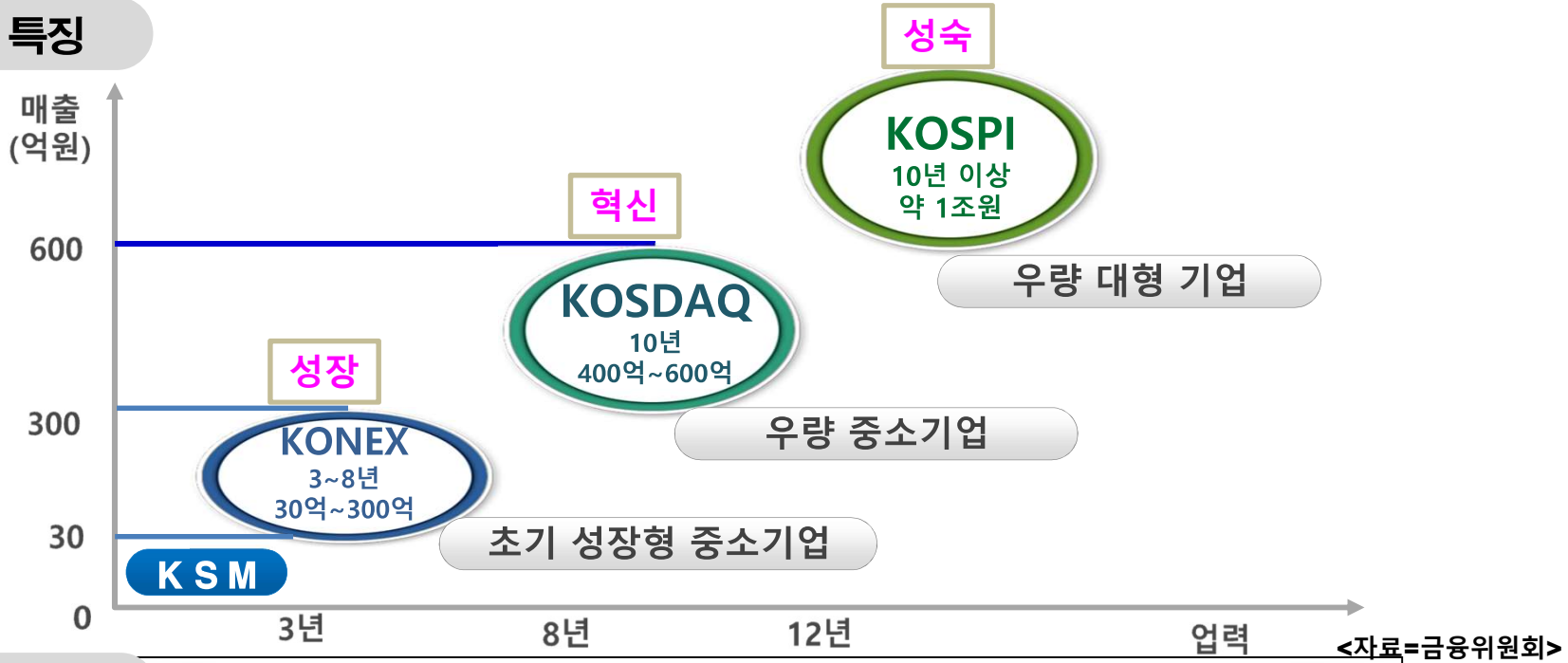

<자료=금융위원회>

시장 별 진입요건

KSM
(KRX Startup Market)

1.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2. 정책금융기관 추천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 NICE평가정보, 서울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성장금융,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스콤,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업은행, 중기특화증권사(4社)

코넥스
(Korea New Exchange)

1. 자기자본 5억 원
2. 매출 10억 원
3. 순이익 3억 원

코스닥

벤처기업	일반기업
1.자기자본 15억	1.자기자본 30억
2.설립연수 제한없음	2.설립한지 3년 이상
3.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 또는 순이익 10억 이상	3.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 또는 순이익 20억 이상
1과 3 모두 충족	1과 3 모두 충족

코스피

1. 자기자본 300억 이상
2. 최근 회계연도 매출 1,000억원
(3년 평균 700억원)

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 창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본을 이용하여 사업아이디어에서 설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행위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 업**』 :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창업자**』 :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

※ 창업시점 :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 창업기업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인정하는 기준
①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②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의 인정범위?

장 소	주 체	구 분		창업여부
동일장소	개인→법인	폐업	동업종	조직변경
			이업종	창 업
		유지	동업종	형태변경
			이업종	창 업
	법인→법인	폐업	동업종	위장창업
			이업종	창 업
		유지	동업종	형태변경
			이업종	창 업
다른장소	개인→법인	폐업	동업종	법인전환
			이업종	창 업
		유지	동업종	창 업
			이업종	창 업
	법인→법인	폐업	동업종	사업승계
			이업종	창 업
		유지	동업종	창 업
			이업종	창 업
	동일명의	폐업	동업종	사업이전
			이업종	창 업
		유지	동업종	사업확장
			이업종	업종추가

창업구분

기술 창업 vs. 생계형 (소상공)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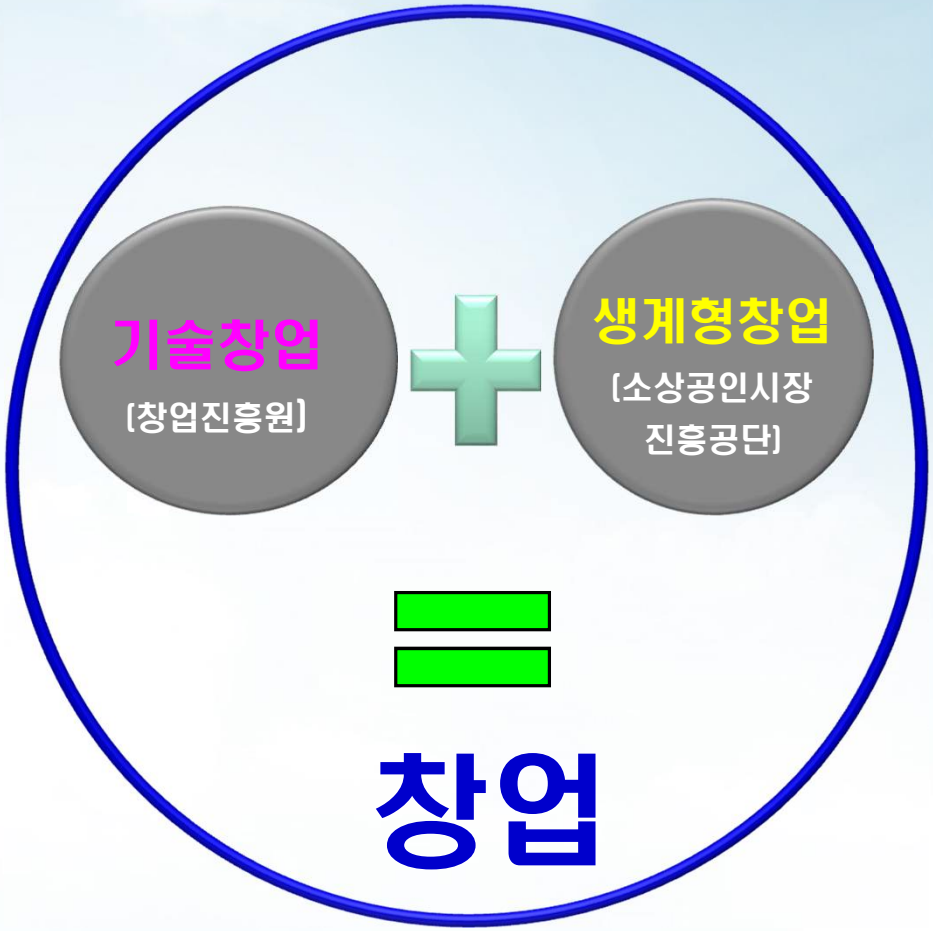

기술창업범위

1. 실무·학문적 정의미흡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2. OECD 분류 기준 사용
   (기술수준별)
   ① 첨단기술
   ② 고기술
   ③ 중기술
   ④ 저기술
   ⑤ 지식서비스 업종 일부

소상공인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2. 도소매,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창업지원 배제업종

창업지원법에서 지원을 배제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 ~ 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 ~ 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명으로 정하는 업종	-

- 단,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하였거나 직원을 고용한 자는 신청 불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 위의 배제업종이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 업태와 종목을 표기되어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함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유형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전략

구 분	개 요	지 원 내 용	소 관 기 관
지원자금 (보조금)	소액 경비 지원 (상환 無)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 카다로그 제작, 인증, 발명특허품 시제품제작, 해외 출원비용, 기술 평가비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앙회, 지방자치단체, 특허청, 발명진흥회, 중소기업 진흥공단.
출연자금 [R&D]	국가 차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육성과제 등에 대한 지원 - 정액기술료 10% 최대4년분납 - 경상기술료 최대20% 5년간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향상 도모하기 위한 자금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특허청, 한국가스공사, 수자원공사, 토지주택, 전력공사 등
융자자금 [보증]	담보 또는 신용 대출금 (원금 + 이자 상환) 부동산, 신용, 기술, 매출	금리, 기간, 조건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 조건의 지원 자금 (중소기업융자자금, 기술개발 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경영개선자금)	기보, 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은행, 공단 등
투자자금 [엔젤,VC]	자기자본으로 투자(배당) 지분	주식발행 조건에 따라 증자 또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금으로 투자 - 엔젤클럽, 전문엔젤, TIPs 등 엔젤매칭펀드	한국벤처투자(주), 엔젤투자지원센터, 벤처캐피탈, TIPS,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기술금융회사,

자금 유형별 확보 전략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전략

구 분	확 보 전 략
지원자금 (보조금)	- 정부지원 100%로 자부담이 없는 자금으로 창업 아이템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자금 내역을 작성한 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매칭하여 효용성을 극대화 할 것! - 출연자금 內 지출항목과 겹치지 않게 하고 사업화 활동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지출할 것! - 소속 자치단체 지원 프로그램 정보 확보 중요.
출연자금 [R&D]	- 한 아이템 당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자금으로 소요자금의 크기에 맞는 출연자금을 매칭할 것! - 출연자금은 지원자금과 달리 자부담이 일정부분 있는 것을 숙지하고 성공 時 현금부담금 확보 가능여부 파악할 것! - 과제 발굴 기준 확립 : 국내외 최초기술, 국산화 기술(수입대체), 기술 개량, 개선 기술 등 파급효과 기술에 대한 방법 전수 - 혁신형 기업 인증 확보 :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 기술개발 인력 확보방안 강구 : 연구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융자자금 [보증]	- 융자자금의 확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 실적 확보필요 매출증대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 창업기업은 대부분 재무제표가 열악하여 현시점에서 융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융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확보, 시제품 개발, 제조 및 제품 판매, 유통망 확보 등 실적 확보 노력이 필요함. - 기업의 임원과 주주들의 신용도 관리가 필요하며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중요함. - 매출 실적이 평가에 있어 중요기준이므로 향후 조달준비사항으로 매출과 수익 등 성장 지표에 대한 실적 확보가 전략이 필요함. *** 규모의 경제실현 : 원가우위전략(薄利多賣)->소싱파워->셀링파워->시장점유율->캐시카우->시스템**
투자자금 [엔젤,VC]	- 지원자금, 출연자금, 융자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투자는 받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함. - 크라우드펀딩, 엔젤매칭펀드, 전문엔젤, Tips 등 투자유치 유형별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인력현황 및 팀워크 등 내부/외부 인적자원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의지,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역량 등이 투자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여 준비하고 구축. - 투자유치 활동을 전담할 수 있거나 집중할 수 있는 인적 배치 환경 조성과 활동이 필요하고, 다른 대안도 함께 추진.

투자자금 확보 전략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전략

- 투자유치 활동은 연애고 성공적인 이혼(EXIT(M&A, IPO)을 전제로 한 정략 계약 결혼이다.

1 회사 가치(Valuation) 극대화

- 창업자 높은 가치평가 희망, 투자자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낮은 가치평가 희망
- 기술적 진입장벽 확보 : 관련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
- 국내외 판매채널 확보 : 다양한 수익모델 구축과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 회사가치 극대화를 위한 논리적인 자료 준비 : 유사BM,경쟁사 대비 차별성

3 최적의 목적과 시기 결정

- 재무적 투자와 전략적 투자
- 경쟁자 전략 및 시장분석을 통한 최적의 투자유치 시기 설정 : 회사의 운명

투자 단계	주요 자금 소요 내역	투자규모	투자유형
Seed 펀딩	초기시장 조사, 연구개발, 시제품 출시	0.5 ~ 20억	AC, 크라우드펀딩
시리즈 A	제품과 서비스 양산 장기 BM 개발	20~150억	마이크로VC VC
시리즈 B	사업확장, 마케팅 및 시장확대, 추가 R&D, 인력충원	70 ~100억	VC
시리즈 C	시장점유율, 생산스케일업, M&A	수십~수천억	헷지펀드, 투자은행

2 정책자금 활용 성장 전략

- 기술적 진입장벽이 확실히 구축된 상태에서는 초기 투자유치보다는 회사가치를 극대화한 후 투자유치를 받은 게 회사 측면에 유리
-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소요자금은 자기자본과 정책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확보 로드맵 수립이 중요

4 유명한 투자자, VC 유치 전략

- 투자유치 성공에 대한 언론 홍보를 통한 회사 이미지, 브랜드 상승효과
- 투자 벤처캐피털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 시너지 효과
- 투자유치 유인효과, 투자컨소시엄을 통한 고액의 투자금액 확보 유리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자금조달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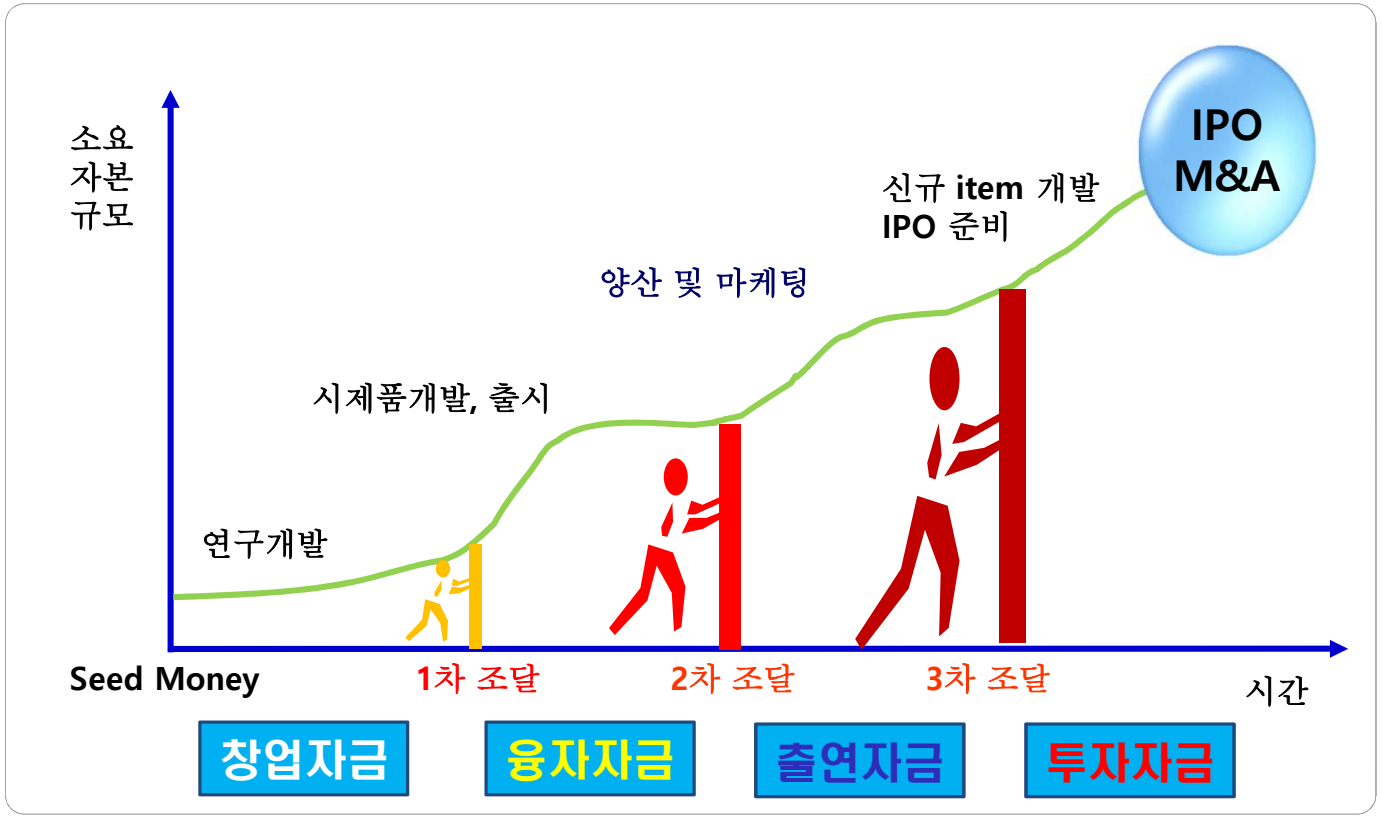

DEATH VALLEY

- 1차 : 연구개발, 시제품개발, 출시 및 양산 진입 단계
- 2차 : 양산진입 단계에 필요한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3차 : 신규 Item R&D와 기존 생산설비 증설지원, IPO 마케팅

성장단계별 자금유형 매칭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전략

창업준비기	창업단계	성장기	성숙기	EXIT
아이템탐색 성장로드맵 (기술, 자금)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연구개발(시제품) 판로개척(PRE) 자금확보(투자유치)	연구개발(양산) 판로확대(국내해외) 자금확보(투자유치) 신규사업(아이템)탐색	연구개발 판로확대 자금확보(투자유치) 신규사업(아이템)탐색 투자유치활동(IR,VC)	IPO M&A 가업승계 폐업
자기자금 (SEED MONEY) (창업)지원자금	자기자금 (SEED MONEY) (창업)지원자금 융자자금(개발)	지원자금 융자자금(운영) R&D출연금(핵심) 투자자금(엔젤)	지원자금 융자자금 R&D 출연금 투자자금(VC)	자금회수

자사 맞춤형 자금확보 로드맵 수립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전략

TO DO LIST + 소요자금 + 자금확보전략

TO DO LIST		소요자금 산출	자금확보전략	확보시기
주요업무	세부내역			
창업비용				
운영자금				
R&D	플랫폼 구축비용	1억소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디딤돌 1.5억	
생산설비				
마케팅				
지식재산권				
각종인증	벤처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작성 방법

- 성장단계별 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필수업무를 도출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소요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함.
- 소요자금을 정확히 산출하고 그 금액에 맞는 자금의 매칭이 중요함. 신청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하고
- 실패 시 자금회수 및 수년간 자금지원 금지 패널티 받을 수 있음.
- 만약 개발자금 5억이 들어가는데 5천만원 지원 받는 프로그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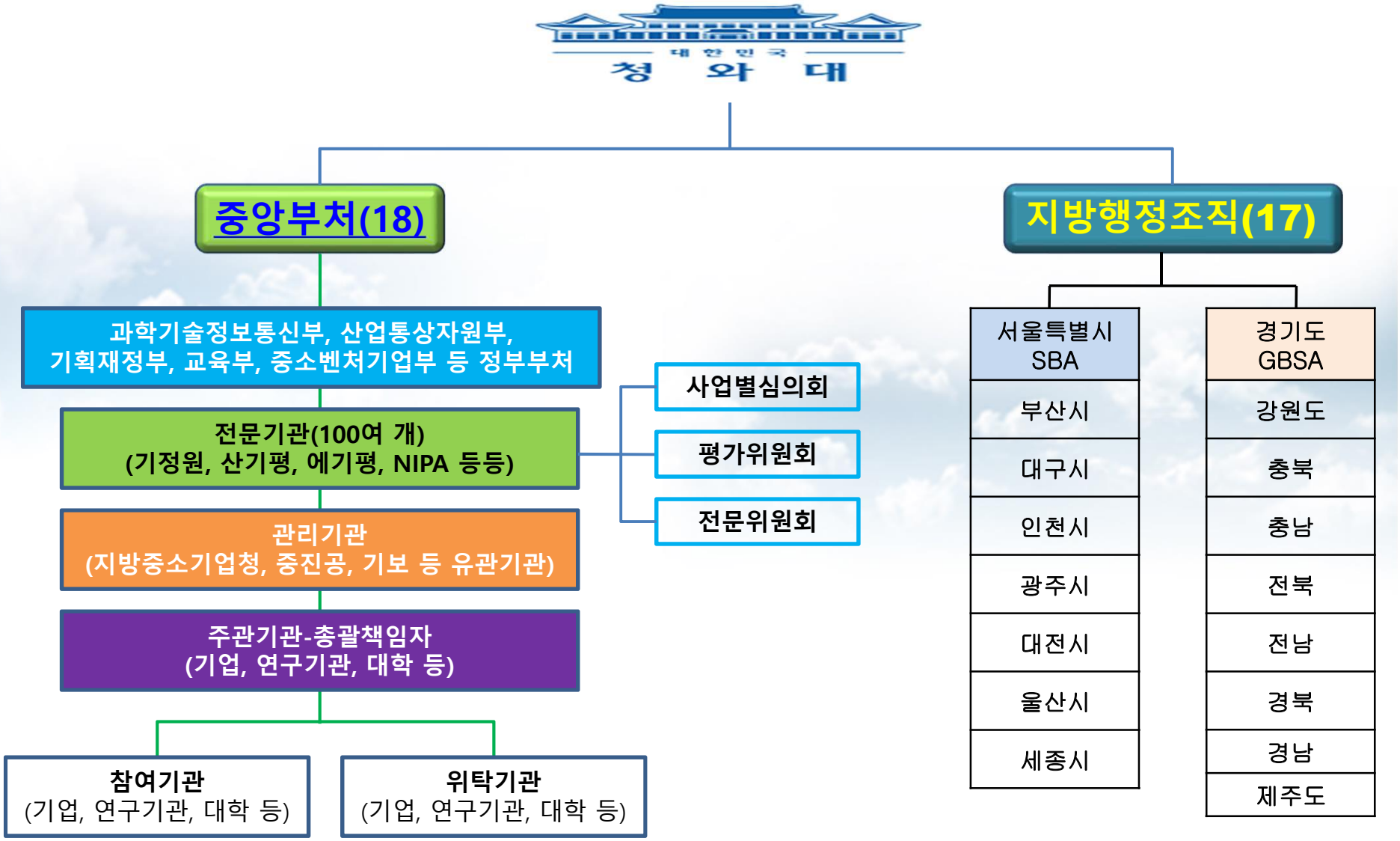

중앙정부_부처별 전담기관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술정보진흥원 > 창업진흥원 > 벤처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체육인재육성재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한국농수산품유통공사 > 농업협동조합 >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노동연구원 > 장애인고용공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물류협회

중앙정부_중소기업 전담기관 지원과제

▣ 기관별 지원사업과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www.keit.re.kr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新산업/주력산업/정보통신)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SBC) www.kosmes.or.kr	▪ 정책자금 융자 - 시설, 운전자금 ▪ 컨설팅 기술지원 - 중소기업건강진단사업 **-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사업(1)** ▪ 해외마케팅 ▪ 연수 - 교육 **- 청년창업사관학교(1)** ▪ 사업전환지원사업 ▪ 무역조정지원사업 ▪ M&A 지원사업 ▪ 재기지원사업 ▪ 이업종교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www.ketep.re.kr	▪ 에너지자원기술 ▪ 글로벌전문기술 (자원순환) ▪ 전력원자력 ▪ 신재생에너지 ▪ 녹색인증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www.kiat.or.kr	▪ 산업기술인력양성 ▪ 산학협력 ▪ 산업기술기반조성 ▪ 기술사업화 촉진 ▪ 소재 부품 산업육성 ▪ 중소중견기업지원 ▪ 산업기술국제협력 ▪ 지역산업육성 ▪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 산업기술포상 및 전략수립

지방행정조직(1)_지자체 기업지원 전담기관_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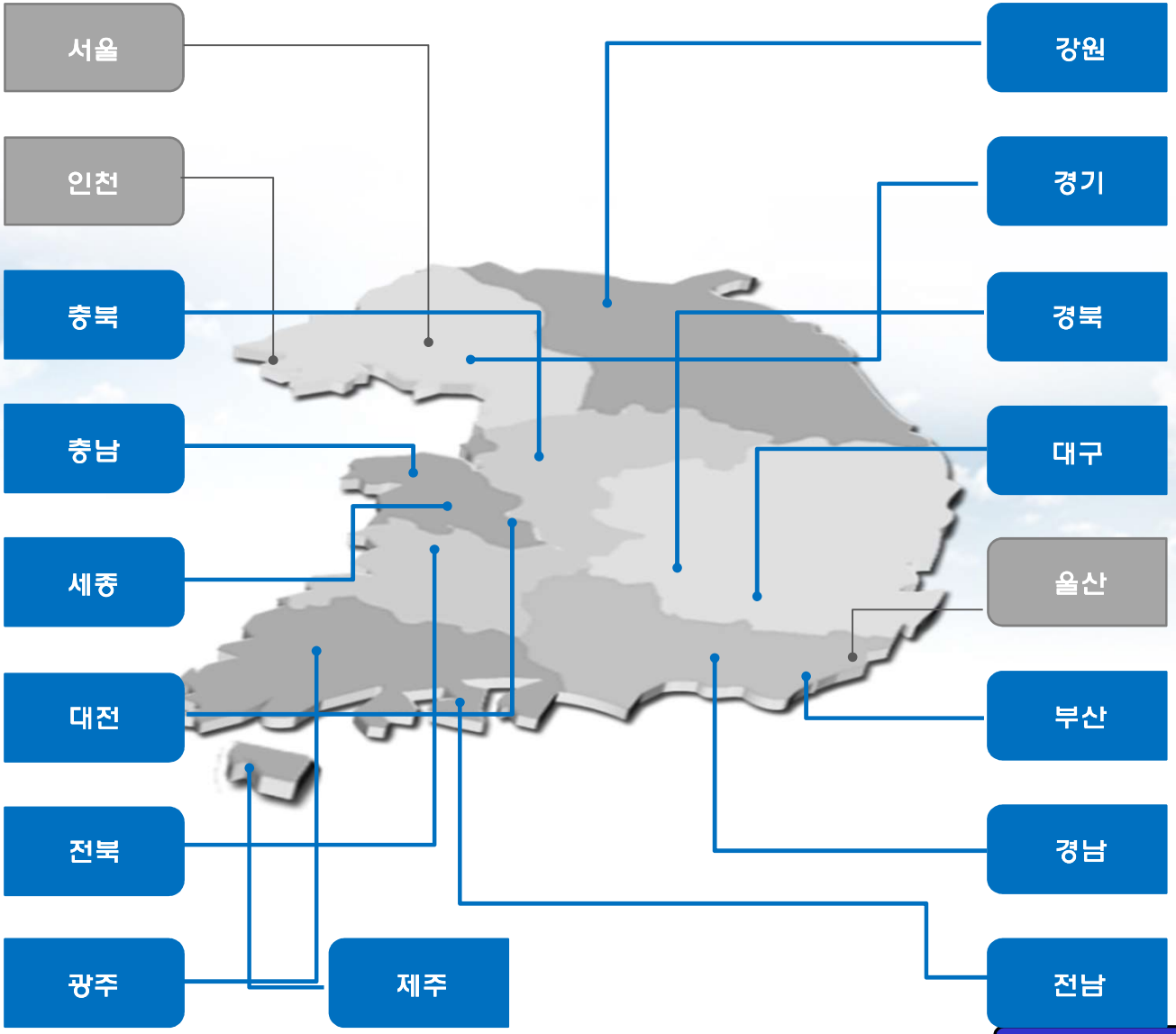

정책자금전문가과정 김성민교수

지방행정조직(2)_지방산업 중장기전략 및 기술사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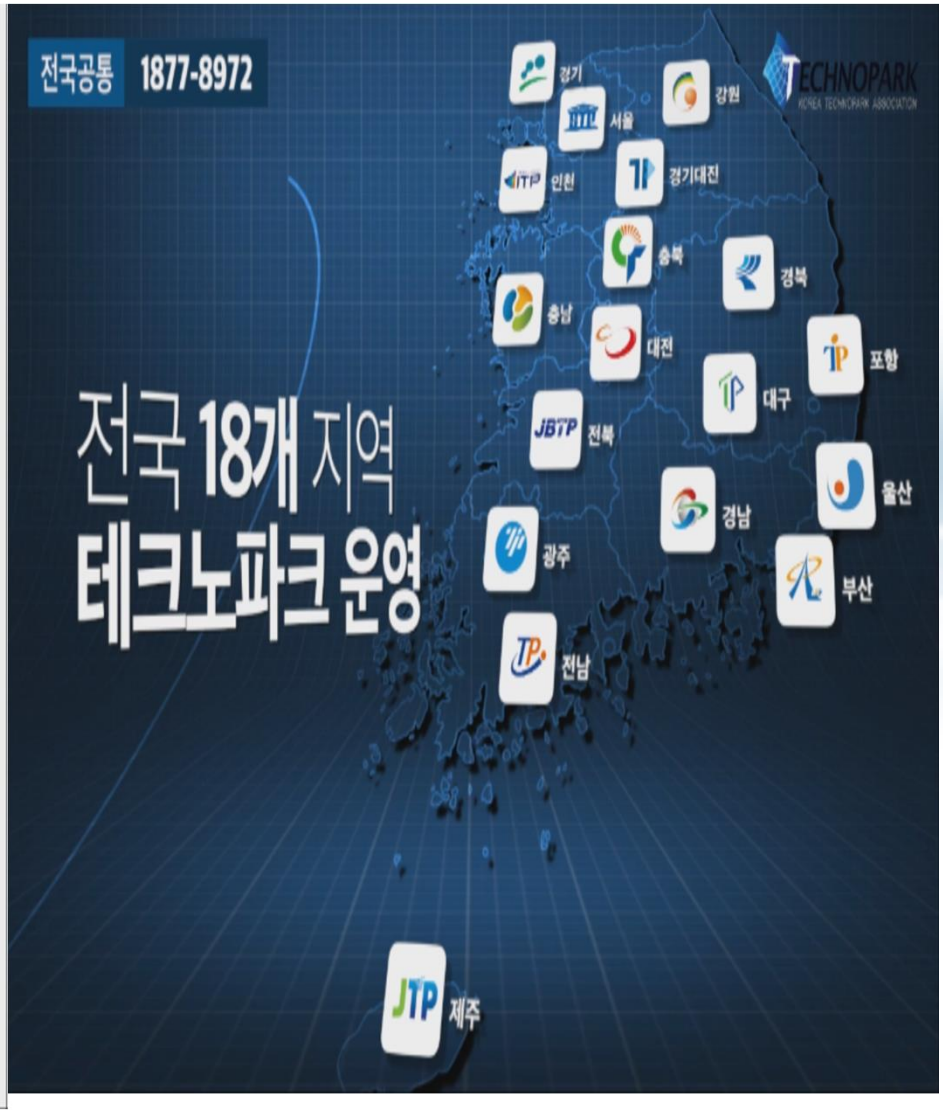

정책자금전문가과정 김성민교수

지방행정조직(3)_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환경 개선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 강화

- 17개 센터 중심으로 창조인프라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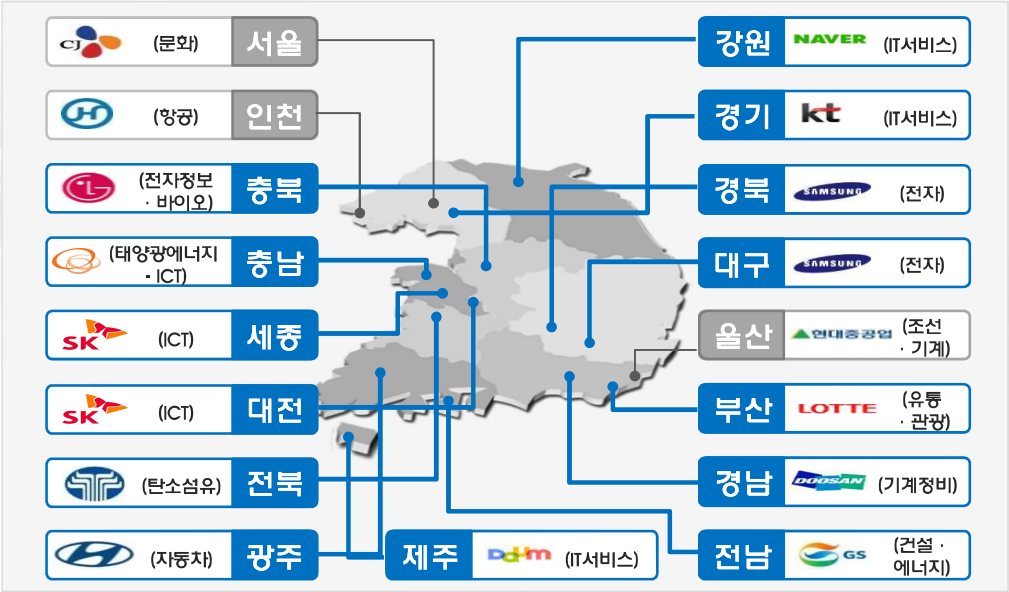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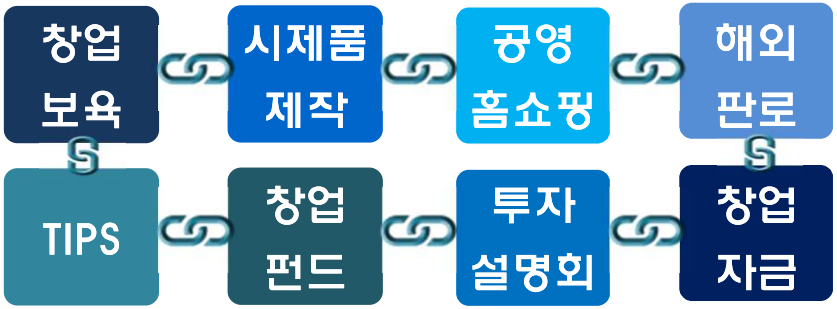

정책자금전문가과정 김성민교수

정보 수집 핵심 노하우

창업

1. 중소벤처기업 지원 플랫폼_반드시 즐겨찾기 할 것!

중앙+지자체 지원	중소벤처 창업지원	중소벤처 R&D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Biz info http://www.bizinfo.go.kr	K-Startup https://www.k-startup.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smtech.go.kr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	**대중소 동반성장**	**R&D의 모든 것!**
G4B 기업지원플러스 Government For Business http://www.g4b.go.kr	상생누리 Corporate Partnership Open Platform https://www.winwinnuri.or.kr	NTIS https://www.ntis.go.kr

2. 각 지원 기관 즐겨 찾기 : 11시 / 17시 공지사항 탐색
   - 자사 핵심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목록 정리 할 것!
   - 속해있는 **지자체** 지원기관 목록 정리 할 것!
3. 각 지원 기관 사이트 회원가입 -> 공고 알리미 신청.
4. 지원기관 정책 설명회, 세미나, 창업교육 등
5. CEO/중소기업 모임, 지원담당자 네트워킹

기초체력다지기 (연혁)

TO DO LIST

1.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각종인증
2. 공장등록 :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제품매출(손익계산서)
3.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4. 지적재산권 확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5. 수출유망중소기업 : CE, FCC
6. 국내외 각종인증 : ISO 9001(품질), 14001(환경)
7. 포상 및 수상
8. 창업교육 이수

▷ 고용영향평가

가점확보

Ⅰ 고용영향평가(Employment Impact Assessment)

1.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정책 사업, 법제도 등 수립 추진으로 예상되는 고용효과 분석, 교유목표 달성하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정책 제시
2.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에 대응한 지원정책
3.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지표가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되면서 주요 정책사업이나 법·제도를 일자리 창출의 관점 필요성 증대

Ⅱ 평가대상

1. 고용률 70%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2.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 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분야 등
3.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4.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 및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과제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문의처	배점한도	비 고
Ⅰ. 일자리 **양**	고용 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관할 고용복지센터(1350)	70	가 항목과 나 항목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Ⅱ. 일자리 **질**	성과 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5)	10	
		나. 내일채움공제 (+5)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6-317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관할 고용복지센터(1350)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1544-8333,02-3770-8800)		
		마. 스톡옵션 운영 (+5)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1636)		
	근로 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관할 고용복지센터(135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가족친화인증 (+5)	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47)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일자리포털개발팀 1577-7114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http://www.hrdkorea.or.kr)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 (http://www.nhrd.net)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5)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Ⅲ. 고용 질서준수	**법령 준수**	가. 고액. 상습 임금체불 (-10)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합 계				-20~100	

1. 구매조건부 **2.** 창업도약패키지 **: 2**단계 발표평가 최대 **20**점 반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2020년도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구)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19년부터 명칭 변경)

2.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2주 소요)

중소기업		사업 전담기관		일자리평가통합관리시스템(SIMS)		사업 관리기관
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사업 신청 기업 대상 일자리 평가 점수 요청	→	고용정보, 정부인증 등 정부 DB 활용하여 점수산출 (2주소요)	→	필요시 추가증빙 확인후 평가점수 확정. 반영

3.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Ⅰ.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높은평점을반영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나. 성과급 지급 (+10) 다. 임금수준 상승 (+10)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0)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0)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0)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0)	2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2.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Ⅲ. 고용질서 준수	1. 법령 준수	가. 고액. 상습 임금체불 (-1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20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각 평가항목 별 개요 및 문의처 2020년도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9),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우리사주제도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스톡옵션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령 기업)	▪ (개요)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 (문의처) 고용부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기업)	▪ (개요)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인건비 및 임금감소보전액 지원 ▪ (문의처) 고용부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01 일자리 양 – 1. 고용증가(7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Ⅰ. 일자리 양	1.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70	가, 나 항목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점수반영

Ⅰ 평가항목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Y-2년 대비 Y-1년 고용 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을 평가

▶ Y년(과제년도) 해당월까지 평가를 받고자하는 기업은 추가 증빙자료 제출할 경우 반영
▶ Y-1년 창업기업은 Y-1년 12월 근로자수를 순증인원으로 평가,
▶ Y년 1월 이후 창업기업은 신청 직전 달의 근로자수를 순증인원으로 평가
▶ 예비창업기업은 30점으로 평가

Ⅱ 평가방법

– 고용증가인원과 고용증가율을 각각 점수화하여, 더 높은 점수를 평가결과로 확정
– 기업 규모별로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 * 단, 1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 인원만 평가

구 분	평가배점	1~9인	10~49인		50인 이상	
		증가(명)	증가(명)	증가율(%)	증가(명)	증가율(%)
상위 10%	70점	4	9	50	42	34
상위 20%	60점	3	6	32	24	21
상위 30%	50점	2	4	24	16	15
상위 40%	40점	-	3	19	11	12
상위 50%	30점	1	-	15	8	9
상위 60%	20점	-	2	11	6	7
1명 이상 고용	10점	-	1	-	1	-

* 증가율 = 증가인원/Y-2년 12월 근로자수) X 100,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현재 근로자 8명인 기업인 'Y-2년 근로자 4명에서 'Y-1년 7명으로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3명, 증가율 75%이며 평가점수는 증가인원 적용 60점

문의

- (확인서류) : 고용보험가입명부 – Y-2년 12월 고용보험 가입명부, Y-1년 12월 고용보험 가입명부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센터

02 일자리 질 – 1. 성과공유(2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10	
		나. 내일채움공제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마. 스톡옵션 운영 (+5)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10점)

Ⅰ 개요

중소기업이 성장 후, 근로자와 경영성과급, 주식 등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협약하는 제도('18년 신설)
* 일자리 질 항목 30점 만점을 받기 위해 이 항목 10점은 필수 사항

Ⅱ 협약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 접속하여 성과공유협약 체결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 '회원가입-신청관리-성과공유협약' 코너 선택 → 도입하고자 하는 미래성과공유 항목*을 선택 → 표준협약서 다운로드 → 기업대표 및 근로자 서명 후, 사이트에 업로드 → 협약완료

* 경영성과급, 임금상승,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직무발명보상, 우리사주, 스톡옵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8개 항목 중 선택

Ⅲ 평가방법

사업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성과공유협약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10점 부여
– 제출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기업 자체적으로 협약한 경우 불인정. 인력시스템을 활용하여 협약서를 업로드하도록 유도 필요

문의

- (추가확인시, 증빙서류) : 미래성과공유협약서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5)

02 일자리 질 – 1. 성과공유(2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10	
		나. 내일채움공제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마. 스톡옵션 운영 (+5)		

나. 내일채움공제(5점)

Ⅰ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Ⅱ 가입방법

ㅇ (가입방법) 내일채움공제사업 온라인가입 (www.sbcplan.or.kr)

Ⅲ 평가방법

사업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5점 부여

문의

- (추가확인시, 증빙서류) 내일채움공제 계약증서
  - 기업별 증빙서류확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6-3175)**

02 일자리 질 – 1. 성과공유(2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10	
		나. 내일채움공제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마. 스톡옵션 운영 (+5)		

다. 청년내일채움공제(5점)

Ⅰ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

Ⅱ 가입방법

ㅇ (가입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
- 참여자격 확인 (www.work.go.kr/youngtomorrow)
- 청년공제 청약신청 :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www.sbcplan.or.kr)

Ⅲ 평가방법

사업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5점 부여

문의

- (추가확인시, 증빙서류) 공제가입증서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센터(1350)

02 일자리 질 – 1. 성과공유(2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10	
		나. 내일채움공제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마. 스톡옵션 운영 (+5)		

라. 우리사주 제도(5점)

Ⅰ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Ⅱ 도입방법

ㅇ 중소기업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

Ⅲ 평가방법

사업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우리사주 설립 통지확인서' 를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 업로드한 기업에 한하여 5점 부여

*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우리사주 설립통지확인서' 발급

문의

- (추가확인시, 증빙서류)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1544-8333, 02-3770-8800)

02 일자리 질 – 1. 성과공유(2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1.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10	
		나. 내일채움공제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마. 스톡옵션 운영 (+5)		

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5점)

Ⅰ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Ⅱ 도입방법

ㅇ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내용 정관 규정에 기재 → 주주총회 결의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체결 –→(벤처기업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Ⅲ 평가방법

사업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를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 업로드한 기업에 한하여 5점 부여

문의

- (추가확인시, 증빙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 (문의처)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1636)

02 일자리 질 – 2. 근로환경(1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가. 정규직 전환(10점)

Ⅰ 개요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하여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의 지원금을 수령한 중소기업

Ⅱ 신청방법

ㅇ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지원금 수령

Ⅲ 평가방법

'Y-1년~사업신청 마감일 직전달*까지 고용부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10점 부여

* 'Y년 3월 사업신청이 마감되는 사업의 경우, ' Y-1년 1월 ~ 'Y년 2월 간 지원금 수령실적이 있을 경우 점수 부여

문의

- (추가확인시, 증빙서류) 정규직전환 지원금 수령증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센터(1357)

02 일자리 질 – 2. 근로환경(1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나. 근로시간 단축(10점)

Ⅰ 개요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중소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선정기업

Ⅱ 신청방법

ㅇ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지원금 수령

Ⅲ 평가방법

'Y-1년~사업신청 마감일 직전달*까지 고용부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10점 부여

* 'Y년 3월 사업신청이 마감되는 사업의 경우, ' Y-1년 1월~ 'Y년 2월 간 지원금 수령실적이 있을 경우 점수 부여

문의

- (추가확인시, 증비서류)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수령 확인증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센터(1350)

02 일자리 질 – 2. 근로환경(1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다. 가족친화 인증기업(5점)

Ⅰ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Ⅱ 인증방법

ㅇ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인증신청

Ⅲ 평가방법

가족친화 인증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기업에 5점 부여

문의

- (추가확인시, 증빙서류)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 (문의처) 한국경영인증원(02-6309-9047)

02 일자리 질 – 2. 근로환경(1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라. 청년친화 강소기업(5점)

Ⅰ 개요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중소기업

○ '18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총 25,900개소)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제외)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 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제조업: 500 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 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인 기업

Ⅱ 선정계획

ㅇ 기업의 다양한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중, 특히, 청년이 선호할 만한 기준 3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우수한 강소기업을 선정 – 신청기업의 근로조건 등을 심사하여, ①임금, ②일생활균형, ③고용안정, 각 분야별 우수 기업을 선정(선정 규모 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 * 동일한 기업이 3개 분야 모두 선정 될 수 있는 등 중복 선정 가능 ○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넷 강소기업 홈페이지(www.work.go.kr/gangso)' 를 통해 기업정보 제공 및 각종 혜택 지원

Ⅲ 평가방법

이노비즈협회 일자리지원센터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기업소개서」

문의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문의 전화 : **031-628-9660** 청년친화강소기업 담당자

* 이메일: **dknae@innobiz.or.kr, ycpark@innobiz.or.kr** / 메일제목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기업명)"

02 일자리 질 – 2. 근로환경(1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마. 노사문화 우수기업(5점)

Ⅰ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Ⅱ 인증방법

ㅇ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청

Ⅲ 평가방법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기업에 5점 부여

문의

- (추가확인시, 증빙서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성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

02 일자리 질 – 2. 근로환경(1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5점)

Ⅰ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Ⅱ 평가방법

ㅇ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기업에 5점 부여

문의

◉ (추가확인시, 증빙서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5)**

02 일자리 질 – 2. 근로환경(1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5점)

Ⅰ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Ⅱ 평가방법

ㅇ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기업에 5점 부여

문의

- (확인서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서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http://www.hrdkorea.or.kr)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http://www.nhrd.net)

02 일자리 질 – 2. 근로환경(10점 만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Ⅱ. 일자리 질	2. 근로환경	가. 정규직 전환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근로시간 단축 (+10)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5점)

Ⅰ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Ⅱ 평가방법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기업에 5점 부여

문의

- (확인서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서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052-7030-593**

03 고용질서 준수 – 1. 법령준수(-20점 감점)

일자리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Ⅲ. 고용질서 준수	1. 법령 준수	가. 고액. 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10점)

Ⅰ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

-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Ⅱ 평가방법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한 명단에 있는 경우, -10점

문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10점)

Ⅰ 개요

용노동부장관이 발표하는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기업

* (중대재해) 중대재해 +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사망재해) 사망재해 2명 이상 +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산재 미보고)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미보고(중대산업사고) 유해 · 위험설비의 누출 · 화재 등 노동자 · 인근 지역에 피해사고

Ⅱ 평가방법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한 명단에 있는 경우, -10점

문의

◉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_대면평가표_2019년

R&D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구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성 (40)	창의·도전성(15)	기술개발 필요성 및 차별성	15	12	9	6	3
	기술개발방법 구체성(15)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5	12	9	6	3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10)	내부 보안관리 체계,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적정성	10	8	6	4	2
사업성 (55)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15)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등 사업화 목표의 규모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의 객관성 ·목표시장 진입가능성	15	12	9	6	3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20)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계획의 구체성 ·사업화를 위한 후속투자계획의 충실성	20	16	12	8	4
	고용 친화도(20)	고용증가, 근로환경(정규직 전환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성과공유(미래성과공유,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스톡옵션운영 등), 법령준수 등	20	16	12	8	4
정책부합성(5)		신성장동력 및 미래성장동력 적합성, 기타 사업별 특화 지표	5	4	3	2	1
합 계			점				

평가 의견	□ 기술성 및 기술개발 역량 : □ 사업성 : □ 정책 부합성 :

* 평가위원간 과제 내용에 대한 토론시 사전 순위결정은 금지(평가위원별 자율평가 실시)
* 고용친화도는 중소기업 고용영향 평가시스템(고용영향평가지표)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
  단, 적용사업들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친화도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 고용영향 평가시스템 미적용사업은 별도의 평가요소를 마련하여 평가실시

R&D가점사항(1)_2020년도_창업성장,구매조건부(1)

TO DO LIST

1)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다만, 성과 조사. 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③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④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1. 벤처기업 인증서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 3.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인증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⑧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행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 공문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
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R&D가점사항(1)_2020년도_창업성장,구매조건부(2)

TO DO LIST

1)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다만, 성과 조사. 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⑪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⑫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
⑬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⑭	**[창업성장]** - **민간투자**를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투자옵션부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5천만원 이상)** -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투자옵션부보증 또는 보증연계투자'를 받은 기업중 투자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 **[구매조건부] :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⑮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⑯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⑰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⑱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⑲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 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⑳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 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